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2016. 6. 27. 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6월 2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6. 6. 21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김갑수 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에 의거 민간 전문가 참여를 규정하고 연임횟수를 규정하여 체육진흥기금운영의 투명성 유지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 (안 제8조제2항)
- 위원의 연임횟수 (안 제8조제4항)
- 팀장명칭 변경 (안 제8조제7항, 안 제12조제2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 기 영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'시행령'이라 한다)제정 (2005.12.28) 당시부터 규정된 '기금운용심의 위원회 민간 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'조항을 그대로 조례에 기재하고, 그 밖에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및 위원회 간사(팀장)명칭 변경 등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임.
- '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'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에 민간 전문가 3 분의 1이상을 참여토록 하는 것은 기금 운용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,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도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, 문 호개방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현재 운영 중인 '위원회'에는 '시행령'에 따라 이미 민간 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여<sup>1)</sup>하고 있는바,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중복하여 조례에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1) 위원회 구성 현황

(단위:명)

계	공무원	구의원	민간인
7	3	1	3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142 호 제출연월일: 2016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에 의거 민간 전문가 참여를 규정하고 연임횟수를 규정하여 체육진흥기금운영의 투명성 유지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 규정

나. 위원의 연임횟수 규정

다. 팀장명칭 변경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합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심사실시(의견 없음)

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 없음)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6.4.28 ~ 2016.5.18,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"한다."를 "하되,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." 로 한다.

제8조제4항 중 "연임"을 "1회에 한하여 연임"으로 한다.

제8조제7항 중 "생활체육담당팀장"을 "기금담당팀장"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"생활체육담당팀장"을 "기금담당팀장"으로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)	제8조(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	②
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<u>한다.</u>	<u>하되, 위원 중</u>
	3분의 1이상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	4
2년으로 하되 <u>연임</u> 할 수 있다.	<u>l</u> 회에 한하여 연임
다만,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	
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	
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.	
⑤ ~ ⑥ (생 략)	⑤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	⑦
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<u>생활체육</u>	<u>기금담당</u>
<u>담당팀장</u> 이 한다	<u>팀장</u>
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)	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금운용관은 문화체육과장이 되고	②
기금출납원은 <u>생활체육담당팀장</u> 이	기금담당팀장
된다.	
	1